

안전보건교육 자료

2016. 03.



서울도시철도공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관한 벌칙제도

1. 제정목적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증진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근로기준법에서 분리하여 1981년 제정되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여 위반자에게 벌칙을 부과하여 실효성을 담보하고 있다. 즉 “사업주의 노력”과 이에 대한 행정관청의 관리감독 및 위반에 대한 처벌에 의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는 법적 구조를 취하고 있다.

2. 산업안전보건법의 벌칙규정 개관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기준법과 함께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기준을 확립하여 책임체계를 명확히 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래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의 일부로 규정되었지만, 1981년 독립한 법률로 제정되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기준법의 부속법규이고,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의 의무를 정하고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규제시스템을 설정함과 동시에 벌칙과 행정기관에 의한 규제로써 이행을 담보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범에 대한 제재로 제9장 벌칙에서는 형벌과 행정벌이 규정되어 있다. 형벌 적용대상은 ①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유형(제66조의 2-1등급), ②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유형(제67조-2등급), ③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유형(제67조의2-3등급), ④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유형, ⑤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유형(제69조-5등급), ⑥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유형(제70조-6등급)으로 분류되어 있다.

3.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의 형벌규정

가. 1등급(중대재해)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및 제24조에서 정한 안전상의 조치와 보건상의 조치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규정은 결과적 가중범 처벌 규정에 해당한다.

나. 2등급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1) 안전상 조치

법 제23조에는 안전상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사업주에 관한 조치의무규정을 두고 있다. 즉, 기계·기구 기타 설비에 의한 위험,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전기·열·기타 에너지에 의한 위험에 관하여 사업주는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필요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법 제24조에서는 보건상의 조치를 두어, 사업주는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그 외에도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흄·미스트·산소결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방사선·유해광선·소음·진동 등에 의한 건강장해, 단순 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환기·채광·조명 등에 대한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등에 관하여 보건조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2) 명령위반

법 제48조 제4항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심사한 후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착공을 중지하거나 계획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고, 제51조에는 감독상의 조치를 두어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명령이 지켜지지 아니하거나 위험상태가 해제 또는 개선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될 때에는 기계 설비와 관련된 작업의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다. 3등급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기계·기구·설비 및 건축물을 대여하는 자의 필요한 조치의무 위반, 방호장치 성능검정 의무 위반, 합격취소 방호장치 사용 등의 금지의무 위반, 기계·기구 및 설비 등의 검사의무 위반, 검사에 불합격된 기계·기구 및 설비 등의 사용금지 의무 위반, 보호구 검정의무 위반, 검정에 불합격된 보호구 사용 등의 금지의무 위반, 유해물질 제조 등의 허가기준에 따른 제조 등의 의무 위반, 불합격된 방호장치를 제조하는 자 등에 대한 수거·파기명령 위반, 임시건강진단 실시명령 위반 등을 두고 있다.

라. 4등급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업주의 직접적인 관리의무 외에도 작업도중의 행정업무상에 따른 의무를 두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도급사업에 있어서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 위반,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자의 안전인증 표시금지 및 광고금지의무 위반 등을 규정하고 있다.

마. 5등급 :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산재발생 보고의무 위반, 건설공사 등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가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수행을 저해하는 조건을 붙이는 경우, 신규화학물질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의무 위반, 작업환경측정 결과 고지 및 그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보호 조치 의무 위반,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작업 전환 등의 조치의무 위반, 질병자에 대한 근로금지 또는 제한 및 회복자에 대한 복직의무 위반 등이 해당한다.

바. 6등급 : 500만원 이하의 벌금

동일한 장소에서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주의 산재예방을 위한 조치 및 작업장에 대한 안전보건점검 실시, 근로감독관의 검사·점검 또는 수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고용노동부 장관의 요구를 받고서 보고 또는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보고를 한 자 등에 대하여는 500만원의 벌금규정을 두고 있다.

사. 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요약)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이상 위반
1. 법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산업재해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72조 제3항 제1호	1) 산업재해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사업장 외 교통사고 등 사업주의 직접적인 법 위반에 기인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300	600	1,000
2. 법 제12조 전단을 위반하여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4항제3호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지 않은 경우(1개소 당)	3	15	30
3. 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4항제3호		300	400	500
4. 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관리감독자에게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4항제3호		500	500	500
5.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16조 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를 두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4항제3호	1)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2)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500	500	500
6. 법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지 않은 경우(법 제29조의2에 따라 노사협의체를 설치·운영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72조 제4항제3호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2) 제25조의4를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지 않은 경우(1회 당)	50	250	500

7. 법 제19조제5항을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 · 의결 또는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4항제3호	1) 사업주가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근로자가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50 10	250 20	500 30
8. 법 제25조(근로자의 준수사항)를 위반하여 조치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5항제2호		5	10	15
9. 법 제29조제6항을 위반하여 사업주의 조치 또는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4항제3호	1) 수급인이 준수하지 않은 경우 2) 수급인의 근로자가 준수하지 않은 경우	50 5	250 10	500 15
10. 법 제29조제8항을 위반하여 수급인에게 위생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거나 자신의 위생시설을 수급인의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절한 협조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72조 제4항제3호		150	300	500
11. 법 제29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노사협의체가 심의 · 의결하거나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4항제3호	1) 사업주가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근로자가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50 10	250 20	500 30
12. 법 제30조제3항 전단을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법 제72조 제3항제2호	1) 사용한 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2) 사용한 금액이 1천만 원 미만인 경우	1,000 목적 외 사용 금액	1,000 목적 외 사용 금액	1,000 목적 외 사용 금액
13. 법 제30조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명세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3항제2호	1) 작성하지 않은 경우 2) 공사 종료 후 1년간 보존하지 않은 경우	100 100	500 200	1,000 300
14. 법 제30조제4항을 위반하여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를 받지 않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한 경우	법 제72조 제5항제3호		100	200	300

15. 법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4항제3호	1) 사무직 및 사무직 외의 근로자에 대한 정기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매분기/1명당) 2)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에 대한 정기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연간/1명당)	3 3	5 5	10 10
16. 법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4항제3호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5	10	15
17. 법 제31조제3항을 위반하여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4항제3호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5	10	15
18. 법 제3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4항제3호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5	10	15
19. 법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직무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4항제3호	1) 법 제32조제1항제1호의 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가 직무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5	20	30
20. 법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3항제2호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1대당)	20	60	100
21. 법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검사에 합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4항제3호	합격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1대당)	5	25	50

22. 법 제36조제4항을 위반하여 유해·위험기계등을 사용한 경우	법 제72조 제3항제2호	1)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유해·위험기계등을 사용한 경우 2)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유해·위험기계등을 사용한 경우	300 300 300	600 600 600	1,000 1,000 1,000
23. 법 제36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이 취소된 유해·위험기계등을 사용한 경우	법 제72조 제3항제2호		300	600	1,000
24. 법 제3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작업장 내 유해인자의 노출 농도를 허용기준 이하로 유지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3항제2호		1,000	1,000	1,000
25. 법 제40조제5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건강장해 방지를 위한 조치 사항을 기록한 서류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5항제2호		30	150	300
26. 법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제공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4항 제2호	-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지 않고 제공하지 않은 경우(화학물질 1종당×제공받지 않은 사업장 1개소당) -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였으나 제공하지 않은 경우(화학물질 1종당×제공받지 않은 사업장 1개소당) 2)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재사항을 누락시키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공한 경우(화학물질 1종당×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재사항을 누락시키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공받은 사업장 1개소당)	10 5 3	20 10 6	50 20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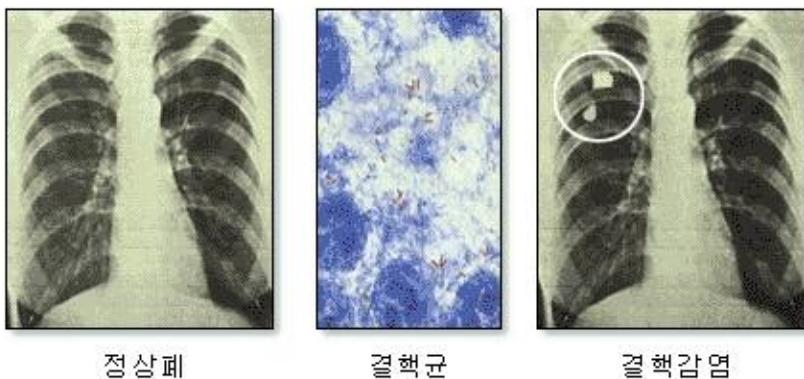
<p>27. 법 제41조제3항을 위반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거나 갖춰두지 않은 경우</p>	<p>법 제72조 제4항제1호</p>	<p>1) 대상화학물질을 양도 · 제공받은 경우 - 대상화학물질을 양도 · 제공하는 자로부터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고도 게시하거나 갖춰두지 않은 경우(화학물질 1종당×작업장당) - 대상화학물질을 양도 · 제공하는 자로부터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지 못하여 게시하거나 갖춰두지 않은 경우(화학물질 1종당×작업장당)</p>	<p>5</p>	<p>10</p>	<p>20</p>
<p>28. 법 제41조제4항 및 제5항을 위반하여 경고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p>	<p>법 제72조 제5항제8호</p>	<p>1) 대상화학물질을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 대상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사업주가 용기에 경고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화학물질 1종당) - 용기 및 포장의 경고표시가 제거되거나 경고표시의 내용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된 경우(화학물질 1종당)</p>	<p>3</p>	<p>6</p>	<p>12</p>

29. 법 제41조제7항을 위반하여 사업주가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물질안전보건 자료에 관한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법 제72조 제5항제8호		5	10	15
30. 근로자가 법 제43조제3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5항제2호		5	10	15
31. 법 제43조제7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 결과를 근로자 건강 보호·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법 제72조 제5항제2호		300	300	300

결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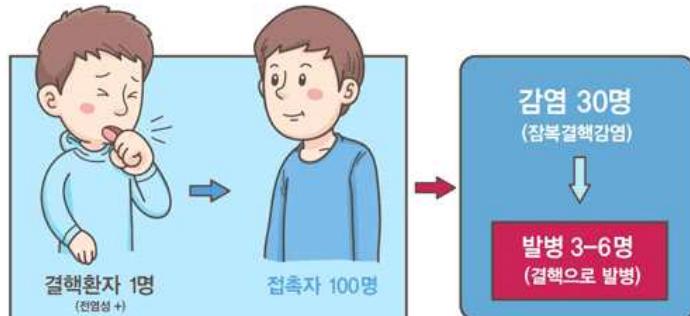
1. 결핵이란?

- 결핵은 결핵균(Mycobacterium tuberculosis)에 의한 공기매개 감염질환으로 18세기 중반 산업혁명 이후 전 세계 대유행이 시작, 항결핵제 개발 이전에는 50% 이상 사망, 1940년대 후반 항결핵제 개발·사용
- 결핵은 신체 여러 부분을 침범하나 결핵에 감염되었다고 해서 모두 발병하는 것은 아니며, 약 10%에서 결핵으로 발병
- 대부분의 환자는 폐결핵으로 발병
- 전염성 결핵환자 : 객담의 결핵균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되어 타인에게 전파 가능



2. 결핵의 감염경로

- 전염성 결핵환자의 기침, 재채기 또는 대화 등을 통해 배출된 결핵균이 공기를 통해 다른 사람의 폐로 들어가게 되면 결핵균에 감염



3. 결핵의 진단과 치료

- 결핵의 진단 : 흉부 X선 검사 후 결핵이 의심되면 결핵균 검사(도말검사, 배양검사, 약제감수성, 핵산증폭검사) 실시
- 결핵의 치료: 표준 치료기간은 6개월
 - 초기 집중치료기 : 2개월간 4제(이소니아지드, 리팜핀, 에탐부톨, 피라진아미드) 복용
 - 후기 유지치료기 : 4개월간 2(3)제(이소니아지드, 리팜핀, (에탐부톨)) 복용
- 다약제내성 결핵: 결핵 치료의 근간이 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약제인 이소니아지드(INH)와 리팜핀(RIF)에 동시에 내성이 있는 결핵균에 의해 발생한 결핵, 최소 18개월 간 치료 필요

4. 결핵의 증상

- 주요증상 : 2주 이상 기침, 발열, 수면 중 식은 땀, 체중감소 등



5. 결핵예방접종(BCG접종) 바로 알기

- 우리나라에서는 생후 1개월 이내의 모든 신생아에게 BCG를 접종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예방접종을 통해 소아에서 발생가능성이 높은 중증 결핵을 예방할 수 있음
- 결핵예방접종(BCG접종)은 소아의 심각한 중증 결핵예방을 위해 접종하는

것으로, 예방접종만으로 결핵이 평생 동안 예방되는 것은 아님

6. 결핵 예방수칙

- 2주 이상 기침이 지속되면 결핵을 의심하고 결핵검사 받기



- 결핵,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 감염병 예방을 위해 기침예절 실천하기
 - 기침, 재채기를 할 때는 손이 아닌 휴지, 손수건이나 옷소매 위쪽으로 입과 코를 가리기
 - 기침이나 재채기 후에는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 씻기



- 꾸준한 운동
- 균형있는 영양섭취
- 환기시키기